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입양 임시양육기간 중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등>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367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21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714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755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91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검토의견	8
1. 입양 임시양육기간 중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김남희의원안) ...	8
2. 입양정보 공개 원칙 전환 등(남인순의원안)	16
3. 가정위탁보호자 우선 결연 등(김미애의원안)	24
4.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규정 정비(김미애의원안)	30
5.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위원장 추가 (김미애의원안)	40

I. 제안경위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3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03. 11.
- (3) 회 부 일 : 2026. 03.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양부모는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도 아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양 절차의 안정

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환경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안 제24조의2 신설).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62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03. 19.

(3) 회 부 일 : 2026. 03. 20.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 (2)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 친생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 (3)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의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3.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71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04. 29.
- (3) 회 부 일 : 2026. 04.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4.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75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6. 04. 30.
- (3) 회 부 일 : 2026. 05. 0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함.

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5.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91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07. 13.
-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항).

II. 검토의견

1. 입양 임시양육기간 중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김남희의원안)

-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친생부모 또는 예비양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 및 해당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교부하거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임시양육기간 중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발급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때부터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의 결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에 관한 서류의 교부·발급 또는 그 기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교부·발급하거나 그 기록사항

	<u>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u>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그 등본 또는 초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

☐ 임시양육결정이란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함(법 제2조제6호).

☐ 법원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 결정을 할 수 있으며(법 제22조제1항), 이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고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됨(같은 조 제3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임시양육결정”이란 가정법원이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22조(임시양육결정) ① 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된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이하 생략)

□ 참고로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양대상아동 결정(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제19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결연(제20조)¹⁾,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제22조), 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21조) 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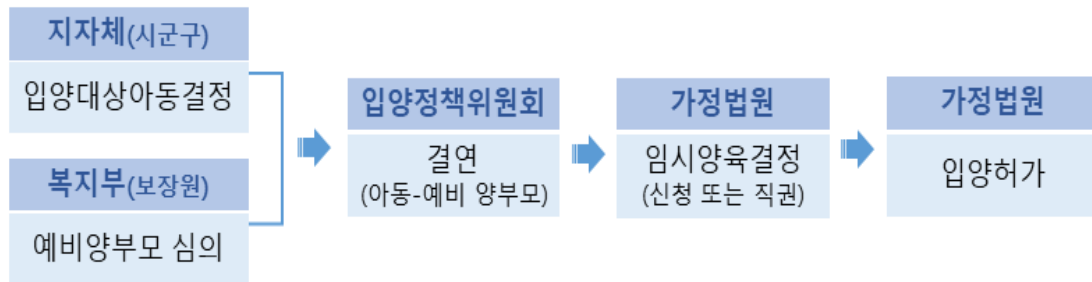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제19조(입양의 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후단 생략)

< 국내입양 주요절차 >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최근 10년간 국내외 입양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모두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기준 총 입양 건수는 140건이며, 그 중 국내입양은 116건이고 국외입양은 24건임.

<국내외 입양 통계>

구분	계	2014년 이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50,540	244,543	1,057	880	863	681	704	492	415	324	229	212	140
국내	81,952 (32.7%)	78,405 (32.1%)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260 (52.9%)	226 (54.5%)	182 (56.2%)	150 (65.5%)	154 (72.6%)	116 (82.8%)
국외	168,588 (67.3%)	166,138 (67.9%)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232 (47.1%)	189 (45.5%)	142 (43.8%)	79 (34.5%)	58 (27.4%)	24 (17.2%)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주: 2025년도 수치는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잠정 통계임

□ 임시양육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3월 11일 기준 17개소의 가정인 임시양육 중에 있으며 누적 가정은 총 83개 가정으로 조사됨²⁾.

2) 본 현황은 입양제도 개편전,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을 입양전제위탁중인 가정으로써 국내입양특별법 부칙 제11조(임시양육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가정임

부 칙<법률 제19555호, 2023. 7. 18.>

제11조(임시양육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으로부터 가정법원의 허가 이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에 의하여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그런데 임시양육 기간 동안 입양대상 아동은 친생부모와 가족 관계(직계혈족)가 유지됨과 동시에 예비양부모와 임시후견인(법정대리인)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됨. 따라서 입양대상 아동에 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친생부모와 예비양부모 간 상호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입양과정에서 친부모와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 상호노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³⁾

○ 입양과정에서 친부모·예비양부모 개인정보 상호노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이에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때부터 입양허가 결정 등이 있을 때까지 예비양부모나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교부·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려는 것임.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6. 3., p.18.

<개정안 개요>

구분	내용
신청자	아동의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신청 대상	☐ 아동에 관한 다음 서류의 교부·발급 또는 그 기록사항의 열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증명서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그 등본 또는 초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비공개 정보	신청자 및 해당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
비공개 기간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때부터 입양허가 여부의 결정 또는 임시양육결정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 개정안은 증명서의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입양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 발생을 예방하며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와 아동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상호 적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 대상 아동이 일반적인 아동인지 아니면 임시양육기간에 있는 아동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임시양육가정이 83개로 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동 등 실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보건복지부에서는 친생부모나 예비양부모가 아동에 대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 담당 공무원이 그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세 열람을 통해 예비양부모나 친생부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교부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기본증명서 상세(예시)>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인	김중이(金中二)	2006년 01월 01일	060101-3234567	남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친권	[친권자지정합의일] 2007년 01월 20일 [친권자] 부 [모의본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1번지의 1234 호주 권권부의 자 [친코일] 2007년 02월 20일 [친코인] 부부
친권	[친권자사망일] 2007년 12월 10일 [친권자] 모 [직권기제서작성일] 2007년 12월 20일 [친권자지정기제직권말소일] 2007년 12월 20일
친권	[친권상실신고심판화정일] 2010년 01월 02일 [심판법원] 서울가정법원 [친권상실원자] 부 김본인 [신고일] 2010년 01월 20일 [신고인] 김전족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후견	[법정후견인취임일] 2010년 01월 02일 [법정후견인] 김전족 [법정후견인의주민등록번호] 800101-2345678 [신고일] 2010년 01월 20일 [신고인] 김전족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행번호 : 2193-2212-0868-2910
1 / 2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권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에서는 기본증명서의 추가 제출 또는 확인으로 인해 민원 불편 및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행정안전부는 해당 아동의 임시양육상태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법무부에서는 해당 아동이 소수인 점, 시스템 연계 구축에 따른 예산 및 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연계보다는 임시양육결정이나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입양정보 공개 원칙 전환 등(남인순의원안)

- 개정안은 친생부모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입양정보를 공개하고, 친생부모의 사망을 입양정보 공개의 독립적인 허용 사유로 규정하며, 국가아동권리보장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생략)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국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u>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u> 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u>다만, 친생 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 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u>	② ----- ----- <u>보유</u> ----- ----- ----- ----- <u>. 다만, 친생부모가</u> <u>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아</u> <u>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u> <u>한</u> ----- ----- -----.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u>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 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u>	③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u> -----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
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
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
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
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

1. 친생부모의 사망

2.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친생
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
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
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
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
자에 대하여 친생부모의 전
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③ 제1항 및 제2항-----
-----자료·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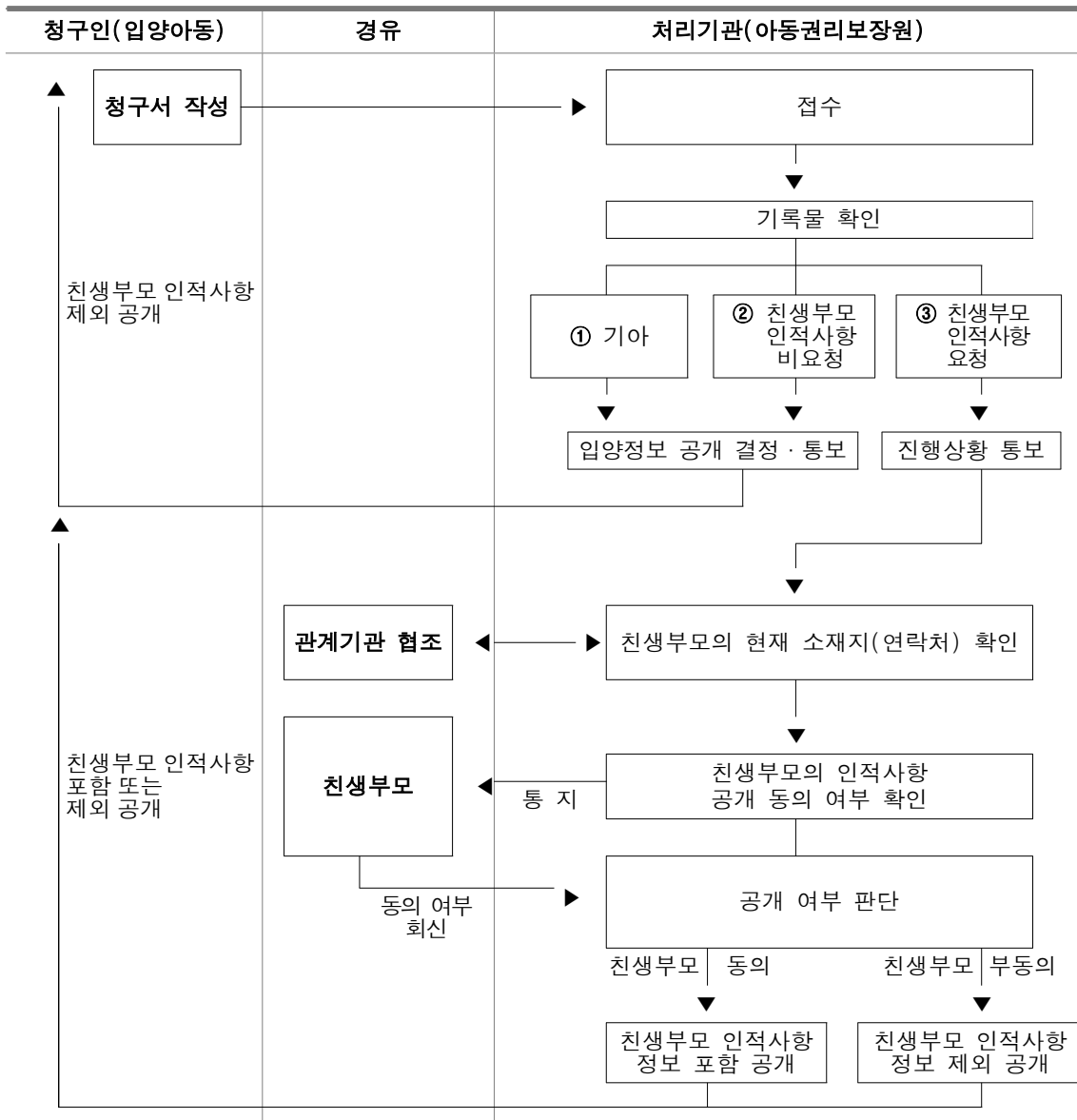
수 없다.	-----.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① -----
1. 2. (생략)	-----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4.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3. 제35조제3항-----
	-----자료·정보-----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같은 조 제3항).⁴⁾

< 입양정보 공개 제도 개요 >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입양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보면, 총 청구 건수 11,311건 중 소재지 조회가 요청된 건수는 7,835건임. 그 중 조회 불가는 2,515건이고 조회 성공은 5,320건임⁵⁾. 조회 성공 건수 중 확인 불가 건수는 2,170건으로 40.8%에 달하는데, 그 중에는 친생부모 본인이 통지를 받고도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입양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됨.

< 2021년 ~ 2025년(9월) 입양정보공개청구 현황 >

(단위: 건)

연도	총 청구 건수	소재지 조회 요청(진행완료)							친생부모 정보없음 (기아)	소재지 조회 미요청*	진행 중
		조회 완료 총계	조회 성공					조회 불가			
			소계	공개 동의	미동의	사망	확인 불가				
2021	1,327 (100%)	1,158 (87.3%)	833 (62.8%)	298 (22.5%)	535 (40.3%)			325 (24.5%)	160 (12.1%)	9 (0.7%)	-
				상봉 15	(9.4%)	(6.8%)	(24.1%)				
2022	2,043 (100%)	1,430 (70.0%)	960 (46.99%)	319 (15.6%)	641 (31.4%)			470 (23%)	200 (9.8%)	413 (20.2%)	-
				상봉 42	(6.3%)	(7.0%)	(18.1%)				
2023	2,717 (100%)	1,926 (70.9%)	1,261 (46.4%)	391 (14.4%)	870 (45.2%)			665 (24.5%)	243 (8.9%)	548 (20.2%)	-
				상봉 215	(6.3%)	(5.9%)	(19.8%)				
2024	3,374 (100%)	2,234 (66.2%)	1,531 (45.4%)	460 (13.6%)	1,071 (29.8%)			703 (20.8%)	358 (10.6%)	782 (23.2%)	-
				상봉 259	(6.3%)	(6.6%)	(18.9%)				
2025** (1 ~ 9월)	1,850 (100%)	1,087 (58.8%)	735 (39.7%)	194 (10.5%)	541 (29.2%)			352 (19%)	248 (13.4%)	510 (27.6%)	5 (0.3%)
				상봉 91	(6.9%)	(6.1%)	(16.3%)				
합계	11,311 (100%)	7,835 (69.3%)	5,320 (47%)	1,662 (14.7%)	3,658 (32.3%)			2,515 (22.2%)	1,209 (10.7%)	2,262 (20%)	5 (0.04%)
				상봉 622	(6.7%)	(6.4%)	(19.2%)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청구 건수 및 처리결과 수기 취합)

주: 소재지 조회 미요청이란 친생부모 정보 미비, 입양서류상 친생부모 이미 사망으로 확인, 친생부모 이미 찾을 등의 사유로 입양인 요청에 따라 소재지 파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5) 소재지 조회 완료 총계는 7,835건으로 조회 성공(5,320건)과 조회 불가(2,515건)를 합한 건수임.

- 참고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갖고 있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제7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정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0.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자신의 인적사항이 청구인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는데, 개정안은 청구인의 알권리와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의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개정안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5조제2항).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현행법은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이고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33조제3항),
- 개정안은 ‘친생부모의 사망’ 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안 제33조제3항).
-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권리 간의 이익형량 범위를 일부 조정 한 것으로 이해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가 생전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도 사후에는 입양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의안번호 2210912,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의안번호 2216650,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친생부모의 연락 두절, 침묵 등 명시적 비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를 친생부모의 동의로 간주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회 통념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유관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친생부모의 연락 두절, 침묵 등 명시적 비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를 친생부모의 동의로 간주하여 공개하는 것은 사회 통념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비추어 신중 검토 필요 ○ 또한, 친생부모 동의 여부 관계없이 입양정보 공개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는 것은 입양인의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권이 충돌할 소지가 있으나, 친생부모 사망 또는 입양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한정하므로, 사회적 합의 시 수용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친생부모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동의 절차를 기존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친생부모와의 전화 연락을 통해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기간을 단축하고 입양인과의 만남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안 제33조제2항 관련, 정보주체에게 공개 청구 사실이 정상적으로 고지되었음에도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공개 동의’로 간주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 통념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가정위탁보호자 우선 결연 등(김미애의원안)

- 개정안은 입양의 원칙에서 아동이 출생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 애착관계를 고려하도록 하며, 위탁부모가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아동과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삭제, 제3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입양의 원칙) ① <u>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u> ② (생략) <u><신설></u>	제3조(입양의 원칙)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③ <u>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야 한다.</u>
제20조(결연) ① (생략) <u><신설></u>	제20조(결연)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가정의 가정위탁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입양하고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가정위탁보호자와 아동을 우선</u>

② (생 략)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 확인서 5. (생 략) ② ~ ⑥ (생 략)	<u>적으로 결연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3항-----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모든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제1항). 동 조항은 1995년 전부 개정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도입되었음.

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995. 1. 5., 전부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조(책임)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 현행법 제3조는 현행법 제6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20조(결연) 등을 통해 개별 결연심사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u>
제2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조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 원가정 보호 원칙은 결연심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입양원칙에서 제외되고, 개정안 제3조제3항에서 신설하는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이 결연심사의 고려요소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모든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원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이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등 다른 규범에도 규정되어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Recalling that each State should take, as a matter of priority,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the child to remain in the care of his or her family of origin, 각 국가는 <u>아동이 자신의 원가정의 보호 아래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함을</u> 상기한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2025. 10. 1. 비준 발효)한 협약임. 동 협약은 국제입양의 절차와 국가 간 협력을 규율하므로 국내입양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협약 전문이 원가정 우선 보호의 방향을 밝히고 있음.

□ 원가정 보호는 법 제6조제1항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원가정 보호를 입양 원칙에서 삭제하는 것은 기본원리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제20조는 가정위탁보호자⁶⁾가 위탁 아동을 입양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정위탁보호자와 아동을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입양대상아동 360명(입양허가 제외)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103명으로 전체의 28.6%임.

□ 개정안은 입양절차에서 아동이 기존 양육자와 형성한 관계의 안정성과 양육환경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가정위탁보호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에게 양육환경의 단절 없이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보임.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제1항의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등에 해당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법 제3조제2항) 이에 따라 결연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법 제20조제1항).
- 따라서 아동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상황 중 가정위탁이라는 상황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법 제3조제1항을 삭제할 경우 아동의 최선 이익 보장에 미흡할 수 있고 안 제20조가 가정위탁 상황만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이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되는 보호조치라는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현행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입양연대회의는 법 제3조제1항의 삭제가 국가 및 사회가 미혼모·부 또는 빈곤가정을 지원하기보다는 입양을 통한 쉽고 빠른 해결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고, 가정위탁보호자 우선 결연은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입장임.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안 제3조) 신중검토 - 법 제3조 제1항은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양육 환경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가정이며 입양은 원가정 양육이 불가능하거나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양의 보충성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동 항을 삭제할 경우 원가정 우선 및 입양 보충성 원칙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의 삭제는 신중검토 필요 *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25.10.1. 비준 발효)되어 있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원가정 우선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아울러, 법 제3조는 입양제도 전반에 대해 기준이 되는 기본이념을 규정한 선언적 조항인 만큼, 안 제3조제3항의 신설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검토 필요 □ (안 제20조) 신중검토 - 모든 위탁아동을 우선결연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경우, 아동의 특성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결연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며, - 현행 제도내에서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예비양부모의 양육여건과 아동의 배경·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부모와의 결연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와의 결연이 진행되고 있어 별도 입법의 실익은 크지 않음 - 따라서 현행 제도 내에서 아동의 상황과 특별한 욕구 등 아동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결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정위탁 상황만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별도로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법 제3조제1항은 원가정 보호 우선 및 입양의 보충성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입양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시되는 보호조치라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므로 현행법 유지 필요
입양연대회의	□ 법 제3조제1항의 삭제는 국가와 사회가 미혼모·부 또는 빈곤가정을 지원해 아동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입양을 통한 '쉽고 빠른 해결'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으며, - 가정위탁보호자 우선결연 규정 신설은 가정위탁보호자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면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위탁제도가 원가정 복귀 지원이 아닌 입양을 위한 사전 대기 및 선점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친생부모의 양육권 회복 기회 박탈, 예비양부모 심사·검증체계의 불공정성, 절차적 특혜 등 자격 검증의 우회와 일반 예비양부모와의 입양매칭 기회의 불평등,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의 충돌, 애착관계에 대한 기계적 판단, 시설아동과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검토 필요

4.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규정 정비(김미애의원안)

- 개정안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각각의 구성·운영 및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② (생 략)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u>위원장을 포함</u> <u>한 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u>위원장을 포함</u> <u>하여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u> <u>200명</u> ----- -----. ----- ----- -----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u>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u> <u>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u> <u>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u>	<u><삭 제></u>

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위원회-----

-----.

제12조의2(분과위원회) ①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로서 위원회에 국내입양분과위원회 및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② 국내입양분과위원회 및 국제입양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각각 100명,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

	<u>역별 안배 및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③ 분과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임(법 제12조).

-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복지·의료·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법원행정처장 추천자 등 50인 이내의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임(법 제12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 현행법은 위원회의 회의가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2조제3항 단서). 위원 명단은 다음 표와 같음.

< 입양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

연번	분야	성명	소속·직함
1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	학계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조소연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6	의료	전지현	강남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7	법률	최인해	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8	법원행정처 추천	박근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9	정책·실무, 학식 및 경험	김성미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10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11		전세희	뿌리의 집 입양인권리옹호팀 팀장
12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13		정익중	前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14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5		정필현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는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 법 제20조에 따른 결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이 있음(법 제12조제2항).

□ 위 심의·의결사항 중 법 제20조에 따른 결연⁷⁾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됨(법 제12조제6항).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⁸⁾.

○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양정책위원회는 ① 국내입양과 관련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 및 결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② 국제입양과 관련한 입양대상아동 결정, 양부모가 될 자격 및 결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제입양분과위원회로 구성됨(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구분	내용
국내입양 분과위원회	• 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 법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내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국제입양 분과위원회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함(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항).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개정안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2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나아가 개정안은 분과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면서,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상향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 안배를 고려하며, 의결정족수를 구성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낮추려는 것임.

〈 현행법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현행법	개정안
위원회	위원 정원	50명 이내	200명 이내
	지역 안배	규정 없음	고려
분과위원회	설치	임의	필수
	위원 정원	각 분과위원회: 10명 이내	• 국내입양분과위원회: 100명 이내 ※ 다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국제입양분과위원회: 10명 이내
	지역 안배	규정 없음	고려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구성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주: 위원 정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것임

□ 개정안은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를 통해 심의 안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 임명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먼저 현행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증원해야 하는바 전문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정책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임.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지역별·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같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제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나아가 분과위원회의 종류를 법률에 열거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과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행정의 탄력성 및 입양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200명”으로 증원할 경우 입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입양정책위원회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위원 수의 과도한 확대는 심의 기준의 일관성 및 표준화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입양연대회의는 정책위원회 위원수를 200명으로 증원할 경우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정책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책임성 약화 및 비전문성 유입 우려 등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며 심각한 행정적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임.

기관	의견
보건복지부	□ 신중검토 ○ (안 제12조 제3항) 입양정책위원회는 일반적인 위원회와는 달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전문적인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한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운영 안착과 논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입양정책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고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200명”으로 증원할 경우, 특정 지역 할당을 맞추기 위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원이 위촉되거나 입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입양정책위원회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분과위원회 위원 풀 확대는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정책위원회는 현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고정하여 구성·운영 중에 있어 정책위원 풀 확대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률 개정으로 인한 실익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의2 신설)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 분과위원회 주요 기능인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 아동과 예비양부모와의 결연은 예비양부모의 거주지역보다 아동과 예비양부모 가정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역별 안배 및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는 규정은 신중 검토 필요 - 또한, 개정안에 따라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 매 심의마다 심사위원이 달라질 수 있어 심의 성향 차이에 따라 심의기준*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위원 선정권이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관계가 큰 입양제도 특성상, 심사 결과에 절차적 하자 주장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 검토 필요 - 따라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심의기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대로 대통령령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가아동권리 보장원	□ 위원 수의 과도한 확대는 심의 기준의 일관성 및 표준화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필요
입양연대회의	□ 정책위원회 위원수를 200명으로 대폭 증원할 경우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정책결정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고, 책임성 약화 및 비전문성 유입 우려 등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심각한 행정적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분과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면 분과별 심사기준이 달라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과도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 발생이 가능하므로 인원 증원 대신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정례화” 또는 “전담 행정인력 보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5.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추가 (김미애의원안)

-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생 략)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u>보건복지부장관</u>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보건복지부장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u> ----- -----.

-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입양심판 확정 이후의 시스템 등록 및 후속 실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입양 심판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26조제1항)⁹⁾.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7조).

□ 이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 입양 정보 관리, 입양정보 공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국내입양 관련 업무(예시) 〉

구분	내용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u>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u> 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사후서비스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가아동권리보장원</u> ,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입양정보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u>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u> 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이와 같이 입양심판 확정 이후 시스템 등록 및 후속 실무를 보장원이 수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입양 심판 확정시 관련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도 통보하도록 2025년 5월 19일 가정법원에 협조 요청을 하였음.

○ 위 협조 요청에 따라 현재 가정법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통보받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가정법원에서는 입양 심판 확정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심판 확정일 이후 최대 2주 이내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동 통지문을 확인하고 있음.

□ 위 통보는 법률상 의무가 아닌 행정협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행지속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지의 안정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수용 입장으로, 현재도 가정법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심판 확정 내용을 직접 통보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운영 중이며, 법률안을 개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실무의 법률 근거가 명확해져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